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현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과학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사업계획서의 제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과학관의 수익사업에는 해양과학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등이 있으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입사업 승인신청서, 수입사업 계획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나.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예산요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등을 지급함(안 제4조)
- 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접수 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관장은 재무제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대비표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등을 하여야 함(안 제9조)
- 자.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차.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훼손·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
- 카. 공무원 등을 파견요청 할 경우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된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타. 해양과학관 명칭 사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안 제13조)

파. 무상 양도되지 않는 물품은 해양과학관이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전·전시·연구할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 말함(안 제1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0. 2.11 ~ 2020. 3.26

2) 행정규제 :

3) 사전심의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 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기념품·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학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 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해양과학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학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과학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해양과학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학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①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학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수입·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해양과학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해양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해양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해양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위탁·관리) ①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훼손·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 요청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해양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해양과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무상양도 제외물품) 법률 제16704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해양과학관이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존·전시·연구할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 우	법 제26조 제2항			
1) 국립해양과학관이 아닌 자가 국립해양과학관이라 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250	300	500
2) 국립해양과학관이 아닌 자가 국립해양과학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 우		150	2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추진단	
연 락 처	(044) 200 - 6071